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1회 임시회

# 검토 보고서

2023. 3. 30.(목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	신종갑 의원 외 8명



복지도시위원회  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 
지원에 관한 조례안”  
**검 토 보 고**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신종갑 의원 외 8명
- 제안일 : 2023. 3. 22.
- 회부일 : 2023. 3. 24. (의안번호 : 23-23)

## 2. 제안이유

-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인권보호의 책무(안 제3조)
-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'23. 3. 17 ~ '23. 3. 22(제출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임.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3조에서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인권보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
  - 안 제6조에서는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임.
- 저장강박 의심가구들은 벌레, 오물, 폐기물 등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본인의 건강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쾌함이 전달되고 화재 등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. 이는 이웃과의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공동체 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이런 측면에서,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.
  
-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  
- 다만, 추후 저장강박 의심가구(2022년 실태조사 : 16개 가구) 기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저장행동에 대한 심리지원, 주거환경개선, 방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#### ○ 제5조(지원내용)

제5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2.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

#### ○ 제7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

제7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」에 해당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고명성
연 락 처	02-3153-8841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사회보장기본법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####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36호, 2021. 7. 27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 4. 7.>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  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-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